

그린캠퍼스 추진위원회 규정

제정 2009. 05. 18.
제1차 개정 2012. 11.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의 그린캠퍼스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정관, 학칙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그린캠퍼스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2. 그린캠퍼스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 심의
3. 그린캠퍼스 추진사업 관련 이의신청 및 조정 등에 대한 심의
4. 기타 그린캠퍼스 추진에 대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입학홍보처장, 사무처장, 생협상임이사, **학생회대표**, **동아리연합회대표**를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30)

- ②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 1(소위원회) **그린캠퍼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그린캠퍼스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조 신설 2012.11.30)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전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는 기획처에서 주관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기획예산과-627, 2009.5.15)

이 규정은 2009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787, 2012.11.30)

이 규정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